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윤리감사관의 분장사무에 회계감사를 포함하며, 법원 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회계감사 및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대상기관을 확대함(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 제3조 및 별표)
-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제 절차, 감사결과 보고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각 절차에 있어 대법원장의 승인 등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 감사결과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
-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한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 그 밖에 용어를 수정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

4.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정기일반사무감사,”를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회계감사는 연중계획에 의하여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와는 별도로 회계업무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일상감사) ①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중 “회수”를 “횡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기일반사무감사 및”을 “정기일반사무감사, 정기회계감사,”로, “수시일반사무감사”를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감사계획통제”를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법원행정처 차장”을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① 감사는 그 실시에 앞서 감사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 수시회계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통고”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에 피감사기관에 통고한다”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로, “그러나 특별한”을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명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를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킬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①”을 “감사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3호에 의하되 지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지체없이 제1항의”를 “제1항의 보고 후 지체 없이 그”로, “대법원”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시정 조치”를 “시정 조치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감사기관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회계감사결과 예산 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중 “각 법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와 횡수표(제3조 관련)

감사종별	감사기관	주무부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	횡수
정기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연 1회
	고등법원	총무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연 1회
수시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고등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수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수시
	지원	총무과 또는 사무과	관하 시·군법원 및 등기소	수시
기획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고등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필요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필요시
	지원	총무과 또는 사무과	관하 시·군법원 및 등기소	필요시
정기 회계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 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사무국 설치 지 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연 1회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사무과 설치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연 1회
수시 회계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사무과 설치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필요시
일상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감사의 종류) <u>정기일반사무감사</u>, <u>수시일반사무감사</u> 및 <u>기획감사</u>로 구분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 (감사의 종류) ① <u>일반사무감사</u>는 <u>정기일반사무감사</u>, <u>수시일반사무감사</u> 및 <u>기획감사</u>로 구분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회계감사</u>는 <u>정기회계감사</u>, <u>수시회계감사</u>, <u>일상감사</u>로 구분한다.</p> <p>1. <u>정기회계감사</u>는 <u>연중계획에 의하여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u>를 말한다.</p> <p>2. <u>수시회계감사</u>는 <u>정기회계감사와는 별도로 회계업무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u>를 말한다.</p> <p>3. <u>일상감사</u>는 <u>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u>를 말한다.</p> <p>제2조의2 (일상감사) ①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u>일상감사</u></p>

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①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회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 사항을 명시한

제3조 (감사대상기관) -----

----- 회수-----
-----.

<삭 제>

<신 설>

각종 감사계획은 인력,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급법원은 사무국장이 이를 통제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은 기타 법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① 감사는 그 실시에 앞서 감사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여야 한다.

② -----

----- 윤리감사관 -----

-----.

제5조의2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
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 수시회계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 바로 시정을 시킬수 있다.

제9조 (감사시 유의사항) ① 각종 감사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0조 (감사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귀청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감사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② 각급법원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보

-----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시 유의사항) 감사관은
은 -----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 (감사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3호에 의하되 지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의 보고 후 지

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법원 및 직근 상급법원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의 시정 조치)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지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즉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특히 감사결과 비위있음이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체 없이 그 -----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의 시정 조치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감사기관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

<신 설>

<신 설>

제13조 (자체 감사) 각 법원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와 회수표(제3조 관련)

감사종별	감사기관	주무부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	횟수
정기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연 1회
	고등법원	총무과	지방법원 및 그 지 원, 가정법원, 행정 법원, 회생법원	연 1회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회계 감사결과 예산 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자체 감사) 소속기관의 장-----

--.

[별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와 회수표(제3조 관련)

감사종별	감사기관	주무부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	횟수
정기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사법연 수원, 사법정책연구 원, 법원공무원교육 원, 법원도서관, 고 등법원, 특허법원	연 1회
	고등법원	총무과	지방법원 및 그 지 원, 가정법원, 행정 법원, 회생법원	연 1회

수시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고등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수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수시
	지원	총무과 또는 사무과	관하 시·군법원 및 등기소	수시
기획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고등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필요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필요시
	지원	총무과 또는 사무과	관하 시·군법원 및 등기소	필요시

수시일반 사무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고등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수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수시
	지원	총무과 또는 사무과	관하 시·군법원 및 등기소	수시
기획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고등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필요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전체기관	필요시
	지원	총무과 또는 사무과	관하 시·군법원 및 등기소	필요시
정기 회계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1. 법원행정처, 사법 연수원, 사법정책 연구원, 법원공무 원교육원, 법원도 서관 2. 고등법원, 특허법 원, 지방법원 및 사무국 설치 지 원, 가정법원, 행 정법원, 회생법 원	연 1회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사무과 설치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연 1회
수시 회계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지방법원	총무과	관하 사무과 설치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필요시
일상감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전체기관	필요시

<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3143